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1291
------------	------

2020년 2월 26일
교 육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2월 5일, 박순규 의원
2. 회부일자 : 2020년 2월 12일
3. 상정일자 :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
(2020년 2월 26일 상정·수정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순규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운동장,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, 단체 등이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나 타 지역 단체의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이 학교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,

장기 사용에 한하여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학교 소재 자치구 주민이 우선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개방된 학교시설물의 장기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이고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함. (안 제5조제2항)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5일 박순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91호로 발의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운동장,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가 아닌 타 지역 단체가 장기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학교의 학생 및 지역주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,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

-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방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현재 학교시설을 개방함에 있어 학교시설 장기 사용신청자가

같은 시간대에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의 지역주민 등이 타 자치구 주민의 장기사용에 밀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이는 점차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에 비해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한 동 조례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.
- 따라서 동 조례는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해당 학교 학생 및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조문에 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물의 장기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이고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내 공립학교에 대한 시설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로 사용한 단체는 총 2,123개이며, 이 중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이외의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는 125개로 전체의 5.9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
[표-1] 학교시설별 사용단체 현황¹⁾

시설구분	사용단체	해당 자치구 지역주민단체	타지역주민	
			단체	사용비율
운동장	959	933	26	2.7%
체육관 (다목적강당)	1,043	958	85	8.1%
테니스장	100	96	4	4.0%
일반교실	2	0	2	100.0%
야구장	9	1	8	88.9%
기타	10	10	0	0.0%
합계	2,123	1,998	125	5.9%

○ 이와 같이 타 자치구 주민이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비록 전체 사용자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동 조례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 조례 제9조에서 이미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자치구 주민들에게 우선적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,

동 조례안과 같이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해당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지역주민에게 해당 학교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○ 다만 시설에 대한 우선 사용 대상이 되는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

1) 동 자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시설사용료 현황을 기준으로 장기사용시 감면률(동 조례 제9조 제1항제2호의 학교 소재 자치구 거주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60 감면)에 따라 작성된 자료임.

로 사료됩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단체가 실질적으로 해당 자치구 주민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자치구에 속하는 단체의 범위를 해당 자치구 주민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. (행정관리담당관-1817, 2020.2.13.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

- 동 조례안 제5조2항에 우선 사용 대상단체의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.

VII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9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2월 26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 제5조제2항은 학교시설 사용신청자 단체 중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하여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
우선 사용 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한 기준이 없는바,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해당 학교 학생 또는 해당 자치구 주민의 구성 비율이 과반 이상일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함(안 제5조제2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항 중 “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”를 “해당 학교 학생 또는 해당 자치구 주민의 수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사용신청자가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사용허가 신청) ① (생 략)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 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<u>학교장이</u> 추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	제5조(사용허가 신청) ① (생 략)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 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 칠 때에는 <u>학교장이 해</u> <u>당 학교 학생 및 해당</u> <u>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</u> <u>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</u> <u>구성된 단체가 우선 사</u> <u>용하게 할 수 있고 그</u> <u>밖에는</u> 추천 등으로 정 할 수 있다.	제5조(사용허가 신청) ① (생 략)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 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<u>학교장이 해당</u> <u>학교 학생 또는 해당 자</u> <u>치구 주민의 수의 비율</u> <u>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</u> <u>된 사용신청자가 우선</u> <u>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</u> <u>밖에는</u> 추천 등으로 정 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또는 해당 자치구 주민의 수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사용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용허가 신청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 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<u>학교장이</u> 추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사용허가 신청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 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<u>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또는 해당 자치구 주민의 수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사용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</u> 추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</p>